

의안번호	제 84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10월 5일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

84

제출연월일 : 2022년 10월 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위탁기간 종료('22.12.31.) 시점 도래
- 「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등에 따라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“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”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 자연학습원
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- 위탁기관 : 청소년 활동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 단체(법인)
※ 現) 위탁기관 : 학교법인 주성학원(2014. 1. 1~ 2022.12.31.) / 3차 재계약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
- 사업비 : 200백만원('22년 운영비 : 도비 100%) * 연도별 변동 가능
- 위탁주요사무
 -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산 관리
 -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부과·징수
 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·훈련
 -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 및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3. 참고사항

가.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현황

- 재 개 원 : 2014. 3. 6. (재건축 '12. 10. ~ '13. 12.)
- 소 재 지 :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314-12(송면리)
- 시설현황 : 대지면적 28,783㎡, 연면적 6,013.36㎡(10동, 지하2층~지상3층)
- 수용능력 : 480명 / 1일 (숙박350명(학생320, 지도자30) / 야영130)
- 운영인력 : 5명 (원장1, 부원장1, 직원3)
- 그간 위탁현황
- 1~3차('14. 1. 1. ~ '22. 12. 31.) / 학교법인 주성학원

나. 관계법령 : 별 첨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(관리·운영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

I 추진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「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관리운영의 위탁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II 위탁개요

- 위탁대상 :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전반
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운영비 : 200백만원 ('22년 운영비 : 도비100%) ※연도별 변동가능
- 위탁사무
 -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재산 관리
 -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부과·징수
 -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·훈련
 -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【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현황 】

- ❖ 재 개 원 : 2014. 3. 6. (재건축 '12. 10. ~ '13. 12.)
- ❖ 소 재 지 :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로 1314-12(송면리)
- ❖ 시설현황 : 대지면적 28,783㎡, 연면적 6,013.36㎡(10동, 지하2층~지상3층)
- ❖ 수용능력 : 480명 / 1일 (숙박350명 (학생320, 지도자30) / 야영130)
- ❖ 운영인력 : 5명 (원장1, 부원장1, 직원3)
- ❖ 그간 위탁현황 : 1~3차 ('14. 1. 1.~'22. 12. 31.) / 3년 주기 / 학교법인 주성학원

III

추진절차 및 계획

① 추진계획	•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	'22. 10월
② 의회동의	• 민간위탁 의회동의	'22. 10월
③ 수탁방법	• 수탁기관 선정 - (방 법) 공개모집 [공고15일이상, 도 홈페이지 공고] - (자 격) 청소년 활동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단체(법인)	'22. 11월
④ 수탁심사	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- (구 성) 6~9명 정도 - (심 사) 전문성, 사업실적, 사업계획 등 - (결 정) 심사를 통한 고득점자 선정	'22. 11월
⑤ 협약공증	• 협약체결 및 공증	'22. 12월
⑥ 사무개시	• 위·수탁 사무개시	'23. 1. 1.

IV

세부추진계획

1 의회보고

- 동의시기 : '22. 10월 임시회 중
- 동의근거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 1항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2 수탁기관 모집공고

- 공고기간 : '22. 11월 중 (15일 간)
- 공고방법 : 공개모집(도 홈페이지 공개)
- 선정방법 : 위탁기간 동안 사업실적, 운영성과 등을 고려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결정(고득점자 선정)

○ 신청자격

- 최근 3년 이상 청소년 육성, 청소년 활동, 청소년 복지,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실적이 있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(지부)를 둔 청소년 단체 및 법인
-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지도사를 두고 있어야 함

○ 위탁조건

- 관계법령·조례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
- 위탁시설의 용도를 임의 변경 사용 금지
- 위·수탁 협약서 공증은 협약체결 후 즉시 수탁기관이 공증하여 제출 등

3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

○ 개최시기 : '22. 11월 ※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준용

- 구성인원 : 9명 이내(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※ 당연직 3 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업무주관 실·국장), 기타(전문가) 위촉
- 심사항목 : 사업실적, 사업수행능력,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 등

○ 계획설명 :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

○ 수탁자 선정 : 사업실적, 운영성과 등 고려하여 최고득점자 선정

- 1개 법인(단체)이 신청 시 재공고 추진(2개이상 신청시 심의)
- 단, 추가 공모에도 1개 법인(단체)만이 신청할 경우, 그 법인(단체)을 대상으로 심의 진행하고, 2개 이상의 법인(단체)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에서 전부 부적격 결정 시 재공모
※ 1개 법인이 신청 수탁기관 선정 평가시 위원별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선정

4 협약체결 및 공증

○ 체결시기 : '22. 12월

○ 내 용 : 협약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, 업무 인계·인수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□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

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·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단체 등(이하 "수탁관리자"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<개정 2008. 7. 11, 2009. 5. 8, 2016. 1. 1>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7. 11, 2009. 5. 8, 2016. 1. 1>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「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.<신설 2016. 1. 1>

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,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8. 7. 11, 2009. 5. 8, 2016. 1. 1>

⑤ 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과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7. 11, 2009. 5. 8, 2016. 1. 1>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18.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4. 그 밖에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12.18.>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

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

□ 추진근거
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2

□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견	비고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	○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단체 및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청소년 관련 법인(단체)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③ 경제적 효율성	○ 수요대비 적정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·운영할 예정이며, 기존 행정재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예정	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도내 청소년 및 도민들을 위한 사업 전문화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	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○ 청소년 수련시설 특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도내 유일 자연형 수련시설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	

□ 검토결과 : 적정

-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「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12조(관리·운영의 위탁)에 근거한 수련시설로,
- 도내 청소년을 위한 특화프로그램(환경교육 등)을 운영하고 있으며, 해당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 분야 전문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관련 법인(단체)의 자원연계 등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.

⇒ **사업내용의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,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**

□ 향후 추진계획

-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·심의 : '22. 10월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: '22. 11월(15일간)
-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: '22. 11월
- 협약 체결 및 공증 : '22. 12월
- 위·수탁사무 개시 : '23. 1. 1.